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35호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안 제6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안 제9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발의”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발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제146조”를 “제16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1조제3항”을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및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41조제5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 ----- -----.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의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 -----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하거	제3조(조사) ① ----- ----- -----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발의--- -----

나,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
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
무를 처리하는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
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군이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
른 지방공기업

5. (생략)

② (생략)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무)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가 위임사무중 국회또는 도의
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
한다.

② (생략)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
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
라 한다) 제117조제2항 -----
-----.
-----.

4. ----- 제163조-----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무) ① -- 제13조제2항에 규정
된 자치단체 사무 및 법 제49조
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인은 의성군의회○○○위원회
가(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
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
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④

제 49 조 제 5 항

-----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5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55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